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
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안재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6-67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2026. 9. 2.

발 의 자 안재훈·양진석·안상미 의원(3인)

1. 제안이유

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여
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,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
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입법예고: 2026. 9. 2. ~ 2026. 9. 7.

다. 비용추계: 불임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
제곱미터당 25개 이상 밀집해있는 구역. 다만,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
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, 주차장, 공원 등의 면적을
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)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	제2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) - ----- ----- -----.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당 <u>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하는</u> 구역. 다만,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, 주차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	1.----- ----- ----- <u>25개 이상</u> <u>밀집해있는</u> -----. ----- ----- -----.
가. <u>상업지역: 30개 이상</u>	<삭 제>
나. <u>상업 외 지역: 25개 이상</u>	<삭 제>
다. <u>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</u> <u>이 혼재된 경우: 주용도지</u> <u>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</u> <u>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</u> <u>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</u> <u>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</u> <u>다.</u>	<삭 제>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 5천만 원 미만 (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)

4. 작성자 :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장 박정옥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- 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제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활성화 지원,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,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, 국·공유지 사용료등 감면,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상인연합회,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45조,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상점가”는 “골목형상점가”로 본다.